

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(정기-2차)
(선산 농기계임대사업소 부지매입 및
보관창고 신축)



구 미 시

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(정기-2차)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25. 10. .

제출자 : 구미시장

1. 제안이유

- 최근 임대사업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보유 농기계 대수 또한 증가하여 기존 부지 내 수용한계를 초과
- 농기계의 적절한 보관과 정비공간 부족으로 운영 효율 저하

2. 주요내용

【취득재산】

- 위치 : 구미시 선산읍 이문리 858, 901-12(2필지)
- 대상 : 부지 5,147㎡(약 1,556평), 건물 1동(연면적 600㎡)
- 기준가격 : 363,086천원
 - 부지(개별공시지가) : 27,800원/㎡ × 5,147㎡ ≒ 143,086천원
 - 보관창고 1동(연면적 600㎡) 220,000천원
- 총사업비 : 720백만원(시비 720)
 - 토목공사비 : 180백만원
 - 보관창고 : 220백만원
 - 토지매입비 : 320백만원
- 사업기간 : 2025. 6. ~ 2026. 12.
- 주요시설 : 농기계임대사업소 보관창고
- 추진현황
 - 선산 농기계임대사업소 부지매입 및 보관창고 신축 계획(안) 수립 : '25. 6.
 - 토지 감정평가 및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: '25. 7.

○ 향후추진계획

-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결 : '25. 10.
- 부지매입 : '26. 2.
- 기반조성 기초토목공사 : '26. 4.
- 보관창고 설치 : '26. 7.

3. 근거법령

- 「농업기계화 촉진법」 제8조의5
- 「지방자치법」 제47조,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
-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10조의2, 같은 법 시행령 제7조
- 「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」 제12조

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(정기-2차)

회계명 : 일반회계

(단위 : m², 백만원)

구분		건수	수량	금액
취득	계	3건	5,747	363
	1.매입	2건	5,147	143
	3.기타 취득	1건	600	220

취득 재산목록(총괄)

회계명 : 일반회계

(단위 : m², 백만원)

구분	재산의 표시			추정 가액	취득 시기	사유	재산 소유자	비고
	재산 구분	소재지	수량(m ²)					
총계			5,747	363				
취득	토지	이문리 858	2,036	56.6	2026년	선산 농기계 임대사업소 부지매입	윤○래	매입
	토지	이문리 901-12	3,111	86.4	2026년		윤○래	매입
	건물 (건축)	이문리 858 외 1필지	600	220	2026년	선산 농기계 임대사업소 신축	구미시	신축

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(정기-2차) 비용추계서 (선산 농기계임대사업소 부지매입 및 보관창고 신축)

I. 비용추계 요약

1. 재정수반요인

- 선산 농기계임대사업소 확장 부지매입 및 보관창고 신축

2. 비용추계의 전제

- 감정평가 진행 후 평균가격을 산정하여 2026년 내 매입

3. 비용추계의 결과

(단위:백만원)

구분		연도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합계
세출	○ 토목공사비		-	180	-	-	180
	○ 보관창고		-	220	-	-	220
	○ 토지매입비		-	320	-	-	320
	계		-	720	-	-	720

4. 재원조달 방안

(단위:백만원)

구분	연도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합계
국비		-	-	-	-	-	-
도비		-	-	-	-	-	-
시비		-	720	-	-	-	720
민간		-	-	-	-	-	-
기타		-	-	-	-	-	-
합계		-	720	-	-	-	720

5. 부대의견

- 해가 거듭될수록 농기계 수용한계치를 넘어서 현재 확장 부지 및 보관창고 신축이 시급함

6. 작성자

- 농촌지원과 농기계지원팀 이현진(054-480-4289)

II. 비용추계의 상세내역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금 액	산출내역	비 고
총 계	720		
공사비	소 계	400	
	토목	180	● 기본토목 및 바닥포장 - 35천 원/m ² ×5,147 ≒ 180,000천 원
	건축	220	● 보관창고 - 366천 원 × 600m ² ≒ 220,000천 원
취득비	소 계	320	
	토지	320	● 62천 원/m ² ×5,147m ² ≒ 320,000천 원

관계법령

□ 「농업기계화 촉진법」

- 제8조의5(임대 농업기계 보관소의 설치·운영)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임대한 농업기계를 효율적으로 보관하기 위하여 각 읍·면·동에 임대 농업기계 보관소(이하 “보관소”라 한다)를 설치할 수 있다.
-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보관소를 직접 운영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시설을 갖춘 기관, 단체 또는 제조·유통업체(이하 “임대사업단”이라 한다)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
-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보관소의 운영을 위탁받은 임대사업단에 대하여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- ④ 보관소의 면적, 설비 및 임대사업단의 운영 방법, 운영비의 지원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.

□ 「지방자치법」

- 제47조(지방의회의 의결사항)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.
- 1.~ 5. 생략
 6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·처분

□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

- 제38조(중요재산, 공공시설의 취득·설치 및 처분의 범위 등) ① 법 제47조 제1항제6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·처분”이란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

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·처분(같은 조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·처분은 제외한다)을 말한다.

② ~ ④ 생략

□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

제10조의2(공유재산관리계획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(이하 “공유재산관리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.

②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,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·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. 이 경우 제출 절차는 「지방자치법」 제55조에 따른다.

④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「지방자치법」 제4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·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.

□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

제7조(공유재산관리계획) ① 법 제1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(이하 “공유재산관리계획”이라 한다)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 [매입, 기부채납, 무상 양수, 환지(換地), 무상 귀속, 교환, 건물의 신축·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,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] 및 처분(매각, 양여, 교환, 무상 귀속, 건물의 멸실,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으로 한다.

1. 공유재산의 취득·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가격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재산
2. 공유재산의 취득·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면적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토지

□ 「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」

제12조(공유재산관리계획) ①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. 다만,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.

②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1건당 기준가격 또는 토지의 기준면적은 다음과 같다.

1.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
가. 취득의 경우: 10억원
나. 처분의 경우: 10억원
2. 1건당 기준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
가. 취득의 경우: 1건당 1천제곱미터
나. 처분의 경우: 1건당 2천제곱미터

소 관 부 서		회 계 과 (농촌지원과)
입 안 자	과 장	임 응 건 (이 욱 희)
	팀 장	정 세 황 (이 창 섭)
	담 당 자	정 민 주 (480-5073) (이 현 진) (480-4289)